

36 / 45

긴급동의

심의결과 워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48	25	1984. 11. 3	총재 최창락

의안 : 「금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의결사항 : 「금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관계 : 한국은행법 제 65조 및 은행법 제 26조

법규조항

제의취지 : 장기 저축에 대한 금리면의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원의 확보 및 국민저축의 증대를 기하고 자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참고사항 : 1. 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 65 조

- ① 금융통화운영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,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생략

은행법 제 26 조

장기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 조건과 기한은 법률로써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은 금융통화 운영 위원회의 규정으로써 정한다.

2. 첨부물

- 가. 금융기관 예금의 기간별 최고이율 및 대출 최고이율 개정(안)
- 나. 예금은행 예금실적 추이

(붙임)

「금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(안)

현행	개정 (안)
<p>제 1조 - 제 2조 (생략)</p> <p>제 3조 (여신이자 및 기타요금의 최고율) ①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에 관련된 이자 및 기타 요금의 최고율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가 수신이율 및 여수신 업무 취급 비용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4조 - 제 5조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	<p>제 1조 - 제 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3조 (여신 이자 및 기타요금의 최고율) ①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에 관련된 이자 및 기타 요금의 최고율은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가 수신이율 및 여수신 업무 취급 비용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4조 - 제 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1984. 11. 5 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1984. 11. 4 이전에 계약된 정기에금,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 까지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.</p>

(첨부물)

가. 금융기관 예금의 기간별 최고이율 및 대출최고이율 개정(안)

① 예 금

(연 %)

구 분	현 행	개 정 (안)	조 정 폭 (%포인트)
정 기 예 금			
1년이상2년6개월만기	9.0 (지방은행은 연 9.5)	10.0 (지방은행은 연 10.5)	1.0
3개월이상1년미만만기	6.0	6.0	-
1개월이상3개월만기	4.0	4.0	-
정 기 적 금			
3년	9.0 (지방은행은 9.5)	10.0 (지방은행은 10.5)	1.0
2년			
1년			
상 호 부 금			
5년	9.4	10.4	1.0
4년	9.2	10.2	
3년	9.0	10.0	
2년	8.8	9.8	
1년	8.6	9.6	

② 대 출

(연 %)

구 분	현 행	개 정 (안)	조 정 폭 (%포인트)
1. 수출어음대출, 외화표시 공급자금대출,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 및 한국은행의 담보대출 대상 이 되는 농수산물자금대출	10.0	10.0	-
2. 상호부금 급부금			
1단계(총납입회차의4/8)	11.64	12.64	1.0
2단계(" 2/8)	11.28	12.28	
3단계(" 1/8)	9.84	10.84	
4단계(" 1/8)	9.00	10.00	
3. 「팩토링」 대출	12.0	12.0	-
4. 제 "1" 내지 제 "3" 이외의 상업어음할인, 당좌대출등 모든대출	10.5	11.5	1.0
	(지방은행은 일반자금대출 (중장기분할 상환포함), 적금관계대출, 당좌대출에 대하여는 상기	좌 등	

(연 %)

구 분	현 행	계 정 (안)	조 정 폭 (%「포인트」)
5. 연 책 대출	이율에 연 1% 「포인트」를 가산할 수 있다) 19.0	19.0	-
6. 「콜」 거래	2영업일 전날의 신종 기업어음 (CP) 평균 매출 이율	삭 제 [자금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이율]	

1504

6

나. 예금은행 예금실적 추이

(단위: 억원)

	잔액				증감		
	81 말	82 말	83 말	84. 9 말 ^P	82 증	83 증	84. 1~9월 ^P 증
요 구 불 예 금	55,343	75,296	82,349	79,933	19,953	7,053	△ 2,416
당 작 예 금	7,105	7,720	8,287	9,822	615	567	1,535
보 통 예 금	11,054	19,058	24,428	25,653	8,004	5,370	1,225
별 단 예 금	34,039	43,036	44,321	39,115	8,997	1,285	△ 5,206
가 계 종 합 예 금	303	915	1,049	1,310	612	134	261
기 타	2,842	4,567	4,264	4,033	1,725	△ 303	△ 231
저 축 성 예 금	114,998	136,597	156,727	165,790	21,599	20,130	9,063
정 기 예 금	52,859	62,691	70,683	70,280	9,832	7,993	△ 403
통 지 예 금	8,157	-	-	-	△ 8,157	-	-
정 기 적 금	27,387	24,365	22,257	20,895	△ 3,022	△ 2,108	△ 1,362
상 호 부 금	3,225	4,458	7,497	10,615	1,233	3,039	3,118
주 택 부 금	1,123	1,619	2,432	3,128	496	813	696
저 축 예 금	15,936	32,600	37,588	42,190	16,664	4,988	4,602
목 돈 마 련 저 축	6,260	10,836	16,255	18,672	4,576	5,419	2,417
기 타	51	28	15	10	△ 23	△ 13	△ 5
합 계	170,341	211,893	239,076	245,723	41,552	27,183	6,647

〔第48號 附議案〕 「金融機關 與受信利率등에 關한 規程」一部改正(案)

說 明 資 料

1984 . 11 . 3 .

I. 金利調整의 背景

1. 金利의 彈力的 運用 및 部分的 自律化를 위한 與件 成熟

가. 通貨의 安定勢 持續

(平殘基準, 前年同期比, %)

	82	83	84.6	9	10.25
M ₂	28.1	19.5	9.9	9.8	8.1
M ₁	24.1	25.9	8.5	12.0	7.7

나. 物價安定의 持續 및 市中 資金事情의 安定化

	82	83	84.6	9
都賣物價上昇率(前年同期比: %)	4.7	0.2	0.4	2.4
消費者 " (")	7.3	3.4	1.7	3.2
全國어음不渡率(金額基準: %)	0.07	0.14	0.08	0.07

2. 公金利와 市場金利間의 隔差 및 内外 金利差의 縮小 圖謀

- 金利機能의 提高를 통한 通貨管理의 效率化

o 通貨供給面의 量的 調節과 金利機能의 活用을 통한 資金需要面의 調節 併行

- 金利自由化의 基盤 造成

金利推移

(%)

	82.12	83.12	84.6	9
A. 會社債收益率	15.9	14.2	13.7	14.5
B. 定期預金(1年)金利	8.0	8.0	9.0	9.0
隔差(A-B)	7.9	6.2	4.7	5.5
C. 國內金利(一般貸出)	10.0	10.0	10.5	10.5
D. 外貨借入實效金利 (美 Prime rate+換率上昇)	17.7	17.2	16.4	16.3
隔差(C-D)	△7.7	△7.2	△5.9	△5.8

3. 銀行의 長期貯蓄 增大 및 設備資金供給能力 擴充 圖謀

— 最近 銀行 受信 Share 의 계속 低下 및 銀行의 施設資金貸出 不振

銀行 및 非銀行의 受信 Share		(%)		
		82 末	83 末	84.8
銀行		64.5	61.0	58.9
非 銀行		35.5	39.0	41.1

金融資金貸出中 施設資金貸出 比重

83.1 ~ 9	84.1 ~ 9
17.6 %	11.5 %

4. 預·貸「마진」의 改善을 통한 銀行의 收益基盤 擴充

預·貸「마진」(取扱損費 不包含) 推移			
(% 「포인트」)			
81	82	83	84.1.23 以後
4.74	2.80	3.52	4.2

II. 金利調整內容

가. 預金金利 最高率

- 一年以上 定期預金, 定期積金 및 相互賦金 金利를 各各 1% 「포인트」씩 引上
 - 1年以上 定期 預·積金: 9.0 % → 10.0 %
 - " 相互賦金: 8.6 ~ 9.4 % → 9.6 ~ 10.4 %

나. 貸出金利 最高率

- 貸出金利의 差等幅을 1% 「포인트」 擴大
(現行 10.0 ~ 10.5 % → 10.0 ~ 11.5 %)
(輸出支援金融, 農水産資金貸出 金利는 現水準 維持)
- 相互賦金 給付金 金利를 1% 「포인트」 引上
(現行 9.0 ~ 11.64 % → 10.0 ~ 12.64 %)
(Factoring 貸出, CD貸出金利는 現水準 維持)

다. 「畧」去來 金利

- 自由化
(現行: 2 營業日 前日의 CP 平均 賣出利率)

Ⅲ . 期待效果

1. 金利를 市場經濟興件에 맞추어 彈力的으로 微調整함으로써 公金利와 市場金利間의 隔差縮小를 통한 金利의 價格機能 提高 및 自由化 基盤 마련
2. 銀行의 長期貯蓄 增大 및 이에 따른 企業에 대한 施設資金 供給 擴大
 - 企業의 投資促進 및 銀行의 受信「쉐어」의 低下 방지
3. 企業의 實金融費用負擔面에서는 거의 中立
 - 銀行金利調整에 따른 企業의 追加的인 金融費用負擔은 約 400 億 원으로 推定되나, 이 措置에 이어 施行될 信託貸出 및 相互信用 金庫 貸出金利 引下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金融費用增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.
 - 信託貸出金利 : 17 ~ 17.5 % → 15.5 ~ 16.5 %
 - 相互信用金庫貸出金利 : 19.5 % → 18.5 %
4. 銀行의 收支改善效果는 約 550 億원 (年間)으로 推算됨.

< 金融機關 與 受信金利 調整案 >

		(年%)		
		現 行	改 正 案	調 整 幅
受	定 期 預 金			
	1年以上 ~ 2年6個月 滿期	9.0(9.5)	10.0(10.5)	1.0
	3個月以上 ~ 1年 未滿 滿期	6.0	6.0	-
	1個月以上 ~ 3個月 未滿 滿期	4.0	4.0	-
	定 期 積 金			
	1年以上 ~ 3年以下	8.0(9.5)	10.0(10.5)	1.0
	貯蓄預金, 家計綜合預金	6.0	6.0	-
	普 通 預 金	1.0	1.0	-
	別 段 預 金	無利子(但 附利時 1.0)	無利子(但 附利時 1.0)	-
	當 座 預 金	無利子	無利子	-
信	相 互 賦 金			
	5 年 制	9.4	10.4	} 1.0
	4 " "	9.2	10.2	
	3 " "	9.0	10.0	
	2 " "	8.8	9.8	
	1 " "	8.6	9.6	
與	輸 出 支 援 金 融	10.0	10.0	-
	農 水 產 資 金	10.0	10.0	-
	相 互 賦 金 給 付 金	9.0 ~ 11.64	10.0 ~ 12.64	1.0
	「 擘 土 浬 」 貸 出	12.0	12.0	-
	其 他	10.5(11.5)	11.5(12.5)	1.0
	延 滯 貸 出	19.0	19.0	-
	「 擘 」 去 來	2 營業日 前날의 CP 平均賣出金利	自由化	-

()內는 地方銀行 金利임